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grandbleu.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주택법」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 후 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balconi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로 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구매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액)

1천 만원 초과 3천 만원 이하 : 2만원 |

3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 : 4만원

5천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0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군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년 6월 17일(월)	2024년 6월 18일(화)	2024년 6월 19일(수)	2024년 6월 26일(수)	2024년 6월 27일(목) ~7월 3일(수)	2024년 7월 8일(월) ~7월 10일(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3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군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4.06.26.(수)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할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I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군포시 주택정책과 - 7295호(2024.06.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군포시 별터·마벨지구 B-1블록(금정동 146-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3~45층 8개동 공동주택 1,072세대

{특별공급 494세대[일반(기관추천) 96세대, 다자녀가구 108세대, 신혼부부 173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생애최초 8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168	01	059.8658A	59A	59.8658	24.8395	84.7053	38.2108	122.9161	27.6642	71	7	6	13	2	7	35	36	2
		02	059.8685B	59B	59.8685	25.3439	85.2124	38.2125	123.4249	27.6654	145	15	14	26	4	13	72	73	4
		03	059.6848C	59C	59.6848	26.2674	85.9522	38.0951	124.0473	27.5805	34	3	4	6	1	4	18	16	1
		04	076.7599A	76A	76.7599	30.5455	107.3054	48.9939	156.2993	35.4710	226	23	22	41	7	20	113	113	6
		05	076.4862B	76B	76.4862	31.6292	108.1154	48.8192	156.9346	35.3445	72	7	8	13	2	6	36	36	2
		06	076.2514C	76C	76.2514	31.8521	108.1035	48.6693	156.7728	35.2360	34	3	4	6	1	3	17	17	1
		07	084.9125A	84A	84.9125	33.6954	118.6079	54.1976	172.8055	39.2383	339	34	34	61	10	30	169	170	9
		08	084.3043B	84B	84.3043	34.5505	118.8548	53.8093	172.6641	38.9573	37	4	4	7	1	3	19	18	1
		09	095.6196A	95A	95.6196	38.4219	134.0415	61.0315	195.0730	44.1861	76	-	8	-	2	-	10	66	2
		10	095.5985B	95B	95.5985	38.9068	134.5053	61.0180	195.5233	44.1763	38	-	4	-	1	-	5	33	1
합 계											1,072	96	108	173	31	86	494	578	29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등 기타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특정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 세대(1,07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차 (`24.09.15)	2차 (`25.06.15)	3차 (`26.03.15)	4차 (`26.11.15)	5차 (`27.04.15)	6차 (`27.10.15)		
59A	71	107동 3호 108동 3호	2	2	393,060,000	308,840,000	-	701,900,000	35,095,000	70,190,000	70,190,000	70,190,000	70,190,000	70,190,000	70,190,000	245,665,000	
			3	2	399,620,000	313,980,000	-	713,600,000	35,680,000	71,360,000	71,360,000	71,360,000	71,360,000	71,360,000	71,360,000	249,760,000	
			4	2	406,170,000	319,130,000	-	725,300,000	36,265,000	72,530,000	72,530,000	72,530,000	72,530,000	72,530,000	72,530,000	253,855,000	
			5	2	410,590,000	322,600,000	-	733,190,000	36,659,500	73,319,000	73,319,000	73,319,000	73,319,000	73,319,000	73,319,000	256,616,500	
			6-9	8	414,960,000	326,040,000	-	741,000,000	37,05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59,350,000	
			10-19	20	419,330,000	329,470,000	-	748,800,000	37,440,000	74,880,000	74,880,000	74,880,000	74,880,000	74,880,000	74,880,000	262,080,000	
			20-29	20	423,750,000	332,950,000	-	756,700,000	37,835,000	75,670,000	75,670,000	75,670,000	75,670,000	75,670,000	75,670,000	264,845,000	
			30-38	15	428,120,000	336,380,000	-	764,500,000	38,225,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76,450,000	267,575,000		
59B	145	107동 4호 108동 2호	2	2	389,540,000	306,060,000	-	695,600,000	34,78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69,560,000	243,460,000	
			3	2	395,980,000	311,120,000	-	707,100,000	35,355,000	70,710,000	70,710,000	70,710,000	70,710,000	70,710,000	70,710,000	247,485,000	
			4	2	402,470,000	316,230,000	-	718,700,000	35,935,000	71,870,000	71,870,000	71,870,000	71,870,000	71,870,000	71,870,000	251,545,000	
			5	2	406,900,000	319,700,000	-	726,600,000	36,33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72,660,000	254,310,000	
			6-9	8	411,210,000	323,090,000	-	734,300,000	36,715,000	73,430,000	73,430,000	73,430,000	73,430,000	73,430,000	73,430,000	257,005,000	
			10-19	20	415,520,000	326,480,000	-	742,000,000	37,1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59,700,000	
			20-29	20	419,890,000	329,910,000	-	749,800,000	37,490,000	74,980,000	74,980,000	74,980,000	74,980,000	74,980,000	74,980,000	262,430,000	
					30-38	15	424,200,000	333,300,000	-	757,500,000	37,875,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75,750,000	265,125,000
				107동 1·2호	2	2	385,670,000	303,030,000	-	688,700,000	34,435,000	68,870,000	68,870,000	68,870,000	68,870,000	68,870,000	241,045,000
					3	2	392,110,000	308,090,000	-	700,200,000	35,01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70,020,000	245,070,000
					4	2	398,550,000	313,150,000	-	711,700,000	35,585,000	71,170,000	71,170,000	71,170,000	71,170,000	71,170,000	249,095,000
					5	2	402,810,000	316,490,000	-	719,300,000	35,965,000	71,930,000	71,930,000	71,930,000	71,930,000	71,930,000	251,755,000
					6-9	8	407,120,000	319,880,000	-	727,000,000	36,35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254,450,000
					10-19	20	411,380,000	323,220,000	-	734,600,000	36,73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73,460,000	257,110,000
		20-29	20		415,690,000	326,610,000	-	742,300,000	37,115,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74,230,000	259,805,000		
			30-38	18	419,940,000	329,960,000	-	749,900,000	37,495,000	74,990,000	74,990,000	74,990,000	74,990,000	74,990,000	262,465,000		
59C	34	108동 1호	2	1	389,030,000	305,670,000	-	694,700,000	34,735,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243,145,000	
			3	1	395,530,000	310,770,000	-	706,300,000	35,315,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70,630,000	247,205,000	
			4	1	401,970,000	315,830,000	-	717,800,000	35,89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251,230,000	
			5	1	406,340,000	319,260,000	-	725,600,000	36,28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72,560,000	253,960,000	
			6-9	4	410,650,000	322,650,000	-	733,300,000	36,665,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73,330,000	256,655,000	
			10-19	10	414,960,000	326,040,000	-	741,000,000	37,05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59,350,000	
			20-29	10	419,270,000	329,430,000	-	748,700,000	37,435,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262,045,000	
			30-35	6	423,580,000	332,820,000	-	756,400,000	37,82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264,740,000		
76A	226	101동 1·2·3호 104동 3·4호 105동 1호	2	6	485,970,000	381,830,000	-	867,800,000	43,39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86,780,000	303,730,000	
			3	6	494,030,000	388,170,000	-	882,200,000	44,110,000	88,220,000	88,220,000	88,220,000	88,220,000	88,220,000	88,220,000	308,770,000	
			4	6	502,150,000	394,550,000	-	896,700,000	44,835,000	89,670,000	89,670,000	89,670,000	89,670,000	89,670,000	89,670,000	313,845,000	
			5	6	507,530,000	398,770,000	-	906,300,000	45,315,000	90,630,000	90,630,000	90,630,000	90,630,000	90,630,000	90,630,000	317,205,000	
			6-9	24	512,960,000	403,040,000	-	916,000,000	45,8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320,600,000	
			10-19	60	518,340,000	407,260,000	-	925,600,000	46,28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92,560,000	323,960,000		

			20-29	60	523,770,000	411,530,000	-	935,300,000	46,765,000	93,530,000	93,530,000	93,530,000	93,530,000	93,530,000	93,530,000	327,355,000		
			30-39	58	529,140,000	415,760,000	-	944,900,000	47,245,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94,490,000	330,715,000	
76B	72	105동 2호 106동 2호	2	2	484,740,000	380,860,000	-	865,600,000	43,28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302,960,000	
			3	2	492,800,000	387,200,000	-	880,000,000	44,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88,000,000	308,000,000	
			4	2	500,860,000	393,540,000	-	894,400,000	44,72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313,040,000	
			5	2	506,240,000	397,760,000	-	904,000,000	45,2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90,400,000	316,400,000	
			6-9	8	511,670,000	402,030,000	-	913,700,000	45,685,000	91,370,000	91,370,000	91,370,000	91,370,000	91,370,000	91,370,000	91,370,000	319,795,000	
			10-19	20	517,050,000	406,250,000	-	923,300,000	46,165,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323,155,000	
			20-29	20	522,420,000	410,480,000	-	932,900,000	46,645,000	93,290,000	93,290,000	93,290,000	93,290,000	93,290,000	93,290,000	93,290,000	326,515,000	
			30-39	16	527,800,000	414,700,000	-	942,500,000	47,125,000	94,250,000	94,250,000	94,250,000	94,250,000	94,250,000	94,250,000	94,250,000	329,875,000	
76C	34	106동 1호	2	1	484,680,000	380,820,000	-	865,500,000	43,275,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302,925,000	
			3	1	492,740,000	387,160,000	-	879,900,000	43,995,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87,990,000	307,965,000	
			4	1	500,810,000	393,490,000	-	894,300,000	44,715,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89,430,000	313,005,000	
			5	1	506,180,000	397,720,000	-	903,900,000	45,195,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90,390,000	316,365,000	
			6-9	4	511,620,000	401,980,000	-	913,600,000	45,680,000	91,360,000	91,360,000	91,360,000	91,360,000	91,360,000	91,360,000	91,360,000	319,760,000	
			10-19	10	516,990,000	406,210,000	-	923,200,000	46,160,000	92,320,000	92,320,000	92,320,000	92,320,000	92,320,000	92,320,000	92,320,000	323,120,000	
			20-29	10	522,370,000	410,430,000	-	932,800,000	46,640,000	93,280,000	93,280,000	93,280,000	93,280,000	93,280,000	93,280,000	93,280,000	326,480,000	
			30-35	6	527,740,000	414,660,000	-	942,400,000	47,120,000	94,240,000	94,240,000	94,240,000	94,240,000	94,240,000	94,240,000	94,240,000	329,840,000	
84A	339	105동 3-4호 106동 3-4호	2	4	518,730,000	407,570,000	-	926,300,000	46,315,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324,205,000	
			3	4	527,410,000	414,390,000	-	941,800,000	47,090,000	94,180,000	94,180,000	94,180,000	94,180,000	94,180,000	94,180,000	94,180,000	329,630,000	
			4	4	536,030,000	421,170,000	-	957,200,000	47,860,000	95,720,000	95,720,000	95,720,000	95,720,000	95,720,000	95,720,000	95,720,000	335,020,000	
			5	4	541,800,000	425,700,000	-	967,500,000	48,375,000	96,750,000	96,750,000	96,750,000	96,750,000	96,750,000	96,750,000	96,750,000	338,625,000	
			6-9	16	547,570,000	430,230,000	-	977,800,000	48,89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97,780,000	342,230,000	
			10-19	40	553,340,000	434,760,000	-	988,100,000	49,405,000	98,810,000	98,810,000	98,810,000	98,810,000	98,810,000	98,810,000	98,810,000	345,835,000	
			20-29	40	559,100,000	439,300,000	-	998,400,000	49,92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349,440,000	
			30-39	38	564,870,000	443,830,000	-	1,008,700,000	50,435,000	100,870,000	100,870,000	100,870,000	100,870,000	100,870,000	100,870,000	100,870,000	353,045,000	
		103동 1-3-4호 104동 1-2호	2	5	513,580,000	403,520,000	-	917,100,000	45,855,000	91,710,000	91,710,000	91,710,000	91,710,000	91,710,000	91,710,000	91,710,000	91,710,000	320,985,000
			3	5	522,090,000	410,210,000	-	932,300,000	46,615,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93,230,000	326,305,000	
			4	5	530,660,000	416,940,000	-	947,600,000	47,380,000	94,760,000	94,760,000	94,760,000	94,760,000	94,760,000	94,760,000	94,760,000	331,660,000	
			5	5	536,370,000	421,430,000	-	957,800,000	47,890,000	95,780,000	95,780,000	95,780,000	95,780,000	95,780,000	95,780,000	95,780,000	335,230,000	
			6-9	20	542,080,000	425,920,000	-	968,000,000	48,400,000	96,800,000	96,800,000	96,800,000	96,800,000	96,800,000	96,800,000	96,800,000	338,800,000	
			10-19	50	547,790,000	430,410,000	-	978,200,000	48,910,000	97,820,000	97,820,000	97,820,000	97,820,000	97,820,000	97,820,000	97,820,000	342,370,000	
			20-29	50	553,500,000	434,900,000	-	988,400,000	49,420,000	98,840,000	98,840,000	98,840,000	98,840,000	98,840,000	98,840,000	98,840,000	345,940,000	
			30-39	37	559,220,000	439,380,000	-	998,600,000	49,93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99,860,000	349,510,000	
		40-45	12	570,640,000	448,360,000	-	1,019,000,000	50,950,000	101,900,000	101,900,000	101,900,000	101,900,000	101,900,000	101,900,000	101,900,000	356,650,000		
		84B	37	103동 2호	2	1	509,490,000	400,310,000	-	909,800,000	45,49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3	1				517,940,000	406,960,000	-	924,900,000	46,245,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92,490,000	323,715,000		
4	1				526,460,000	413,640,000	-	940,100,000	47,005,000	94,010,000	94,010,000	94,010,000	94,010,000	94,010,000	94,010,000	329,035,000		
5	1				532,110,000	418,090,000	-	950,200,000	47,51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95,020,000	332,570,000		
6-9	4				537,770,000	422,530,000	-	960,300,000	48,015,000	96,030,000	96,030,000	96,030,000	96,030,000	96,030,000	96,030,000	96,030,000	336,105,000	
10-19	10				543,420,000	426,980,000	-	970,400,000	48,520,000	97,040,000	97,040,000	97,040,000	97,040,000	97,040,000	97,040,000	97,040,000	339,640,000	
20-29	10				549,080,000	431,420,000	-	980,500,000	49,025,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98,050,000	343,175,000	
30-38	9				554,740,000	435,860,000	-	990,600,000	49,530,000	99,060,000	99,060,000	99,060,000	99,060,000	99,060,000	99,060,000	99,060,000	346,710,000	

95A	76	102동 1·3호	2	2	555,920,000	436,800,000	43,680,000	1,036,400,000	51,820,000	103,640,000	103,640,000	103,640,000	103,640,000	103,640,000	103,640,000	362,740,000	
			3	2	565,201,000	444,090,000	44,409,000	1,053,700,000	52,685,000	105,370,000	105,370,000	105,370,000	105,370,000	105,370,000	105,370,000	105,370,000	368,795,000
			4	2	574,426,000	451,340,000	45,134,000	1,070,900,000	53,545,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107,090,000	374,815,000
			5	2	580,602,000	456,180,000	45,618,000	1,082,400,000	54,120,000	108,240,000	108,240,000	108,240,000	108,240,000	108,240,000	108,240,000	108,240,000	378,840,000
			6-9	8	586,823,000	461,070,000	46,107,000	1,094,000,000	54,7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382,900,000
			10-19	20	592,988,000	465,920,000	46,592,000	1,105,500,000	55,275,000	110,550,000	110,550,000	110,550,000	110,550,000	110,550,000	110,550,000	110,550,000	386,925,000
			20-29	20	599,153,000	470,770,000	47,077,000	1,117,000,000	55,85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390,950,000
			30-39	20	605,329,000	475,610,000	47,561,000	1,128,500,000	56,425,000	112,850,000	112,850,000	112,850,000	112,850,000	112,850,000	112,850,000	112,850,000	394,975,000
95B	38	102동 2호	2	1	552,277,000	433,930,000	43,393,000	1,029,600,000	51,48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102,960,000	360,360,000	
			3	1	561,446,000	441,140,000	44,114,000	1,046,700,000	52,335,000	104,670,000	104,670,000	104,670,000	104,670,000	104,670,000	104,670,000	366,345,000	
			4	1	570,671,000	448,390,000	44,839,000	1,063,900,000	53,195,000	106,390,000	106,390,000	106,390,000	106,390,000	106,390,000	106,390,000	372,365,000	
			5	1	576,791,000	453,190,000	45,319,000	1,075,300,000	53,765,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107,530,000	376,355,000	
			6-9	4	582,956,000	458,040,000	45,804,000	1,086,800,000	54,34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108,680,000	380,380,000	
			10-19	10	589,076,000	462,840,000	46,284,000	1,098,200,000	54,910,000	109,820,000	109,820,000	109,820,000	109,820,000	109,820,000	109,820,000	384,370,000	
			20-29	10	595,241,000	467,690,000	46,769,000	1,109,700,000	55,485,000	110,970,000	110,970,000	110,970,000	110,970,000	110,970,000	110,970,000	388,395,000	
			30-39	10	601,361,000	472,490,000	47,249,000	1,121,100,000	56,055,000	112,110,000	112,110,000	112,110,000	112,110,000	112,110,000	112,110,000	392,385,000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옥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34),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IV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59C	76A	76B	76C	84A	84B	95A	95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3	1	4	1	1	6	1	-	-	1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	2	1	-	3	-	-	-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	3	1	-	5	-	-	-	12	
	중소기업 근로자	2	3	1	5	2	1	8	1	-	-	23	
	장애인	경기도	1	2	1	4	1	1	6	1	-	-	17
		서울특별시	1	2	-	3	1	-	4	1	-	-	12
인천광역시		-	1	-	2	-	-	2	-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3	7	2	11	4	2	17	2	4	2	54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7	2	11	4	2	17	2	4	2	54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26	6	41	13	6	61	7	-	-	17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4	1	7	2	1	10	1	2	1	31	
생애최초 특별공급		7	13	4	20	6	3	30	3	-	-	86	
합 계		35	72	18	113	36	17	169	19	10	5	49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통장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포시 및 경기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포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포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청약통장 사용 여부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군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군포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미적용 		

■ ②배점(「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재혼인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77 597 2094 1070"> <thead> <tr> <th data-bbox="277 597 506 631">단계</th> <th data-bbox="512 597 831 631">소득구분</th> <th data-bbox="837 597 2094 631">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7 636 506 741">1단계</td> <td data-bbox="512 636 831 741">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data-bbox="837 636 2094 74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277 746 506 851">2단계</td> <td data-bbox="512 746 831 851">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data-bbox="837 746 2094 85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277 856 506 926">3단계</td> <td data-bbox="512 856 831 926">우선공급 (35%)</td> <td data-bbox="837 856 2094 926">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277 931 506 1001">4단계</td> <td data-bbox="512 931 831 1001">일반공급 (15%)</td> <td data-bbox="837 931 2094 1001">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277 1006 506 1070">5단계</td> <td data-bbox="512 1006 831 1070">추첨공급</td> <td data-bbox="837 1006 2094 1070">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군포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277 1248 2094 1392"> <thead> <tr> <th data-bbox="277 1248 506 1282">순위</th> <th colspan="2" data-bbox="512 1248 2094 128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7 1287 506 1337">1순위</td> <td colspan="2" data-bbox="512 1287 2094 1337">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data-bbox="277 1342 506 1392">2순위</td> <td colspan="2" data-bbox="512 1342 2094 1392">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군포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6.07.(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군포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6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군포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6.07.(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519 2085 707">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포시 및 경기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포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군포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군포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80 1067 2085 120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제</th> <th style="text-align: center;">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60㎡ 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280 1263 2085 146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상한</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6.17.(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건본주택(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1)
일반공급	1순위	2024.06.18.(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06.19.(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청약홈</th> <th>서비스</th> </tr> </thead> <tbody>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26.(수) ~ 2024.07.05(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td> </tr> </tbody> </table>	청약홈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26.(수) ~ 2024.07.05(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청약홈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26.(수) ~ 2024.07.05(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6.2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6.26.(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 토스, 신한 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07.08.(월)~2024.07.10.(수) (10:00~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방문예약제 운영)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자격 확인 서류제출 대상	자격 확인 서류제출 일정	자격 확인 서류제출 장소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2024.06.27.(목)~2024.07.03.(수)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방문예약제 운영으로 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31)
	예비입주자	※ 제출 대상 및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정해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 체결 이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아래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은 홈페이지(<https://www.prugio-grandbleu.com>)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7.(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취

소, 부적격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서류와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1]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 생략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순부임)	○		해외체류(단순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영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영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영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분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분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분주택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소득세 입증서류 (납부내역증명서 등)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소득증빙서류] <표3>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 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발급용에 한함 / 용도 : 위임용(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O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는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

구 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 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상기 방법 또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 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①, ②, ③ 해당직장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서 및 확인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직인날인)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입만 인정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공고일 이전 신고만 인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법인 결산서 ③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①, ② 세무서 / 등기소 ③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①, ② 세무서/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 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필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직인날인)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폐업 증명서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팩스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3]

구분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위촉(재직)증명서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② 세무서 ③, ④ 해당직장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팩스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산입증 제출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초과 추첨제 신청자) [표4]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접속 →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접속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정복지센터 ③ 이택스(서울시), 위택스 ④ 행정복지센터,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표5]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 생략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전세피해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원본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부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불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 확인 여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양가족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1~3점)한 경우 ※ (인터넷)청약홈→청약자격확인→순위확인서 발급→[일반공급용]청약통장 가입확인용→주택명 선택.발급 신청청하기→출력 ※ (은행)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1~3점)한 경우 ※ (인터넷)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조회화면 출력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발급용에 한함 / 용도 : 위임용(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O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Ⅷ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비고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4.07.08.(월) ~ 2024.07.10.(수) (3일간, 10:00~17:00)	견본주택(방문예약제 운영으로 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31)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972401-01-031226	(주)무궁화신탁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전자수입인지	본인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외 대리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 불가, 용도란 아파트 계약 위임용 기재 ※ 본인 발급용
	○		위임장	당첨자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계약 체결 구비서류 중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와 관련하여 납부 방법 등은 추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멸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 로 관리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건본주택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화와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로 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구매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액)

1천 만원 초과 3천 만원 이하 : 2만원

3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 : 4만원

5천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시행위탁자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예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조 제9항 일부개정예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만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시행수탁자의 계좌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 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4조)

<p>검색대상</p>	<p>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주택의 범위</p>	<p>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주택처분 기준일</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p>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구분	59A	59B	59C	76A	76B	76C	84A	84B	95A	95B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확장비용	21,604,000	20,856,000	20,823,000	27,159,000	23,562,000	23,683,000	29,249,000	23,804,000	35,508,000	30,305,000	
	납부방법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계약금(15%)
		3,240,600	3,128,400	3,123,450	4,073,850	3,534,300	3,552,450	4,387,350	3,570,600	5,326,200	4,545,750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중도금(15%)
		3,240,600	3,128,400	3,123,450	4,073,850	3,534,300	3,552,450	4,387,350	3,570,600	5,326,200	4,545,75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잔금(70%)		
15,122,800	14,599,200	14,576,100	19,011,300	16,493,400	16,578,100	20,474,300	16,662,800	24,855,600	21,213,500			

- 발코니 확장금액은 발코니 확장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약정일자에 중도금 납부,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부위 마감 연장(거실 우물천장 확대), 거실 아트월 대형 타일,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현관창고 시스템선반(76A, 95B), 복도팬트리 시스템선반(76A/B/C, 84A/B, 95A/B), 전동 빨래 건조대(76A, 84A/B, 95A),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의 단열재는 최종 사업 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비난방 구간으로써 천장/ 바닥 등에는 별도의 단열재가 시공이 되지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부위별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관련 설계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 시 단열재 설치 등으로 실제 사용면적(유효면적)과 법정 발코니 면적(서비스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 확장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972401-01-031200	㈜무궁화신탁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입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발코니 확장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 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주방 스타일링 특화, 평면옵션 및 수납특화옵션, 가전류 등)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건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A/C - 59B기준 / 76B/C - 76A기준 / 84B, 95A/B - 84A기준)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1) 라이프업 스타일링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3연동 중문	59A/B/C 76A/B/C	1,770,000	177,000	1,593,000	
						84A/B	1,800,000	180,000	1,620,000	
						95A/B	1,880,000	188,000	1,692,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실)	59A 76A 84A 95A	1안	- 벽 : 실크벽지 - 바닥 : 강마루(섬유판)	2안	- 벽 : 흡착벽지 - 바닥 : 광폭 강마루(섬유판)	59A	1,290,000	129,000	1,161,000	
						76A	1,520,000	152,000	1,368,000	
						84A	1,650,000	165,000	1,485,000	
						95A	1,950,000	195,000	1,755,000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실) + 거실 아트월	59B/C 76B/C 84B, 95B	1안	- 벽 : 실크벽지 - 바닥 : 강마루(섬유판)	2안
59C	1,420,000	142,000	1,278,000							
76B	1,550,000	155,000	1,395,000							
76C	1,520,000	152,000	1,368,000							
84B	1,740,000	174,000	1,566,000							
				95B	2,220,000	222,000	1,998,000			

- 벽 마감재 옵션은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강마루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조명 특화	59A/B/C 76A/B/C	1안	-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안	- 거실 간접조명 - 침실(침실1,2,3) 옛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59A	1,690,000	169,000	1,521,000	침실조명 직하부분 디밍/색온도, 침실 음성인식 기능 추가		
						59B/C	2,340,000	234,000	2,106,000			
						76A	1,660,000	166,000	1,494,000			
						76B/C	2,320,000	232,000	2,088,000			
	84A/B 95A/B	1안	- 기본 조명 - 스마트 스위치 일반형	2-1안	- 거실 간접조명 - 침실(침실1,2,3,4) 옛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84A	1,980,000	198,000	1,782,000			
						84B	2,470,000	247,000	2,223,000			
						95A	2,360,000	236,000	2,124,000			
						95B	2,600,000	260,000	2,340,000			
						2-2안	- 거실 간접조명 - 침실(침실1,2,3) 옛지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 시)	84A	1,740,000		174,000	1,566,000
								84B	2,230,000		223,000	2,007,000
								95A	2,120,000		212,000	1,908,000
								95B	2,360,000		236,000	2,124,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조명기구는 유상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평면선택 옵션/유상선택옵션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특화 선택 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시 조명 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 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주방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4A/B, 95A/B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선택 시 스튜디오 내 조명은 디밍/색온도, 음성인식 기능이 불가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수납 특화	59A/B/C 76B/C 84A/B 95A	1안	- 기본신발장	2안	- 신발장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59A	770,000	77,000	693,000	
						59B/C	680,000	68,000	612,000	
						76B/84A	660,000	66,000	594,000	
						76C	710,000	71,000	639,000	
						84B	620,000	62,000	558,000	
						95A	640,000	64,000	576,000	
	76A 95B	1안	- 기본신발장 - 현관창고 * 가구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2안	- 신발장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 현관창고 * 풀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76A	1,880,000	188,000	1,692,000	
						95B	1,900,000	190,000	1,710,000	

- 전타입 현관/창고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창고 내 설치되는 풀대형 시스템 선반은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현관/창고 수납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창고 수납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설치에 따라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복도 팬트리 특화	76A/B/C 84A/B 95A.B	1안	- 복도팬트리 * 가구도어 * 풀대형 시스템선반	2안	- 복도팬트리 * 풀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76A	1,730,000	173,000	1,557,000	
						76B	1,090,000	109,000	981,000	
						76C	1,080,000	108,000	972,000	
						84A	1,300,000	130,000	1,170,000	
						84B	1,320,000	132,000	1,188,000	
						95A	1,510,000	151,000	1,359,000	
						95B	1,440,000	144,000	1,296,000	

- 복도 팬트리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팬트리 내 설치되는 풀대형 시스템 선반은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84A, 95A 타입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복도 팬트리가 삭제되어 복도 팬트리 특화 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드레스룸 특화	전타입	1안	- 파우더장 - 드레스룸 * 가구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2안	- 파우더장 삭제 - 드레스룸 특화 *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 선반 (조명 유리선반 포함) * 천장형 제습기	59A/B/C	4,050,000	405,000	3,645,000	
						76A	6,260,000	626,000	5,634,000	
						76B/C	4,810,000	481,000	4,329,000	
						84A	5,170,000	517,000	4,653,000	
						84B	4,330,000	433,000	3,897,000	
						95A	5,700,000	570,000	5,130,000	
						95B	5,510,000	551,000	4,959,000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폴대형 시스템 선반은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 (코스텔, CDD-600B)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는 별도 유상 선택 가능합니다. (빌트인 가전 옵션 : 천장형 제습기)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84A/B 95A/B	1안	- 미설치	2안	- 매립형 불박이장(폴딩도어)	84A	2,840,000	284,000	2,556,000	
						84B	2,900,000	290,000	2,610,000	
						95A/B	2,940,000	294,000	2,646,000	

- 침실2,3 불박이장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침실3 불박이장	59A/B/C 76A/B/C	1안	- 미설치	2안	- 침실3 불박이장	59A/B/C	1,150,000	115,000	1,035,000	
						76A/B/C	1,230,000	123,000	1,107,000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침실1 불박이장	84A/B 95A/B	1안	- 미설치	2안	- 침실1 불박이장(폴딩도어)	84A/B	3,860,000	386,000	3,474,000	
						95A	3,970,000	397,000	3,573,000	
						95B	4,640,000	464,000	4,176,000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침실1 불박이장 길이는 동일합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 및 강마루가 설치됩니다.

3) 라이프업 키친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스타일링 특화	전타입	1안	- 벽 :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 싱크 수전 : 국산(절수기일체형) - 기본조명기구	2안	- 벽 : 엔지니어드스톤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 수전 : 외산(절수기제외) - 주방 특화조명기구 (주방슬림라인+식탁등+주방 작업등)	59A	4,350,000	435,000	3,915,000	
						59B	2,880,000	288,000	2,592,000	
						59C	2,940,000	294,000	2,646,000	
						76A	4,170,000	417,000	3,753,000	
						76B	2,940,000	294,000	2,646,000	
						76C	2,940,000	294,000	2,646,000	
						84A	5,050,000	505,000	4,545,000	
						84B	3,460,000	346,000	3,114,000	
						95A	5,020,000	502,000	4,518,000	
						95B	3,460,000	346,000	3,114,000	

-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스타일링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센서식 싱크 절수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 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특화 (스타일링 특화 + 평면옵션)	59A/B/C 76A/B/C 95B	1안		- 평면 : 기본형주방 - 벽 :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 싱크 수전 : 국산(절수기일체형) - 기본조명기구	- 평면 : 장식장 추가 - 벽 : 엔지니어드스톤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 수전 : 외산(절수기 제외) - 주방 특화조명기구 (주방슬림라인+식탁등+ 주방작업등)	59A	7,040,000	704,000	6,336,000	
						59B	6,020,000	602,000	5,418,000	
						59C	6,080,000	608,000	5,472,000	
						76A	6,780,000	678,000	6,102,000	
						76B/C	6,110,000	611,000	5,499,000	
						95B	6,730,000	673,000	6,057,000	
	84A 95A		- 평면 : 기본형주방 -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 싱크 수전 : 국산(절수기일체형) - 기본조명기구	- 평면 : 아일랜드+ 장식장+ 현관창고 특화 - 벽 : 엔지니어드스톤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싱크 수전 : 외산(절수기 제외) - 주방 특화조명기구 (주방슬림라인+식탁등+ 주방작업등)	84A	10,550,000	1,055,000	9,495,000		
					95A	11,580,000	1,158,000	10,422,000		

- 주방 특화 옵션형(2안)의 마감 항목(2.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외산 싱크수전 4.주방특화조명기구)은, 해당 타입의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에 포함되므로,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과 중복선택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다다, DD-277AC) 제품이 설치 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외산 수전(Hansgrohe, #72800) 제품이 설치되며, 센서식 싱크절수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 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84A, 95A 타입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복도 팬트리가 삭제되어 복도 팬트리 특화 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냉장고/ 김치 냉장고장	59A/B/C	1-1안	- 냉장고장+키큰장	2안	- 3컬럼패키지 냉장고	59A/B/C	5,200,000	520,000	4,680,000	84B, 95B 타입 2-1안 선택시 키큰장 있음
		1-2안	- 냉장고 상부장							
	76A/B/C	1-1안	- 냉장고장+ 김치냉장고 상부장	2안	- 3컬럼패키지 냉장고+키큰장	76A/B/C	5,200,000	520,000	4,680,000	
		1-2안	- 냉장고장+키큰장+ 가전소물장							
	84A/B 95A/B	1-1안	- 냉장고장+ 김치냉장고 상부장	2-1안	- 3컬럼패키지 냉장고	84A	4,900,000	490,000	4,410,000	
						84B	5,200,000	520,000	4,680,000	
						95A/B	5,200,000	520,000	4,680,000	
		1-2안	- 냉장고장+키큰장+ 가전소물장	2-2안	- 4도어냉장고 +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 키큰장	84A/B	5,900,000	590,000	5,310,000	
	95A	5,900,000	590,000	5,310,000						
	95B	6,150,000	615,000	5,535,000						
쿡탑	전타입	1안	- 3구 가스쿡탑	2안	- 인덕션 3구	650,000		65,000	585,000	
전기오븐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일반형	450,000		45,000	405,000	삼성전자 NQ36A6555CK
				3안	- 고급형	850,000		85,000	765,000	삼성전자 NQ50T8539BK
식기 세척기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일반형	1,200,000		120,000	1,080,000	삼성전자 DW60BB800UAP
				3안	- 고급형	1,500,000		150,000	1,350,000	삼성전자 DW60BB837UAP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RZ34C7865AP), 냉장고(RR40C7995AP), 김치냉장고(RQ34C78(9)45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새틴기준이며, 76 이하 타입은 새틴화이트 84 이상 타입은 새틴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4도어 키친핏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 패키지는 상냉장/하냉동고(RF60DB9KA1AP),김치냉장고(RQ33C74E1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84 타입 이상만 선택 가능)
- 4도어 키친핏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 패키지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새틴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쿡탑 옵션품목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 (하츠, SSGC-3605SABH)이 설치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형(인덕션 3구) 선택 시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면 마감재는 새틴기준이며, 76 이하 타입은 새틴화이트 84 이상 타입은 새틴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냉장고 상부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용량에 따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라이프업 스페이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비스포크 스튜디오	84A/B 95A/B	1안	- 침실4	2안	- 비스포크 스튜디오 * 유리슬라이딩도어 * 벽/천장 마감 특화 * 조명기구 특화	84A	4,790,000	479,000	4,311,000	
						84B	5,320,000	532,000	4,788,000	
						95A	5,450,000	545,000	4,905,000	
						95B	6,040,000	604,000	5,436,000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천장 특화 마감재는 본공사 시 제조사, 규격, 나누기 및 시공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형(유상) 미선택 시 슬라이딩도어 프레임이 시공되지 않으며, 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 시 스튜디오 내 조명은 디밍/색온도, 음성인식 기능이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 시 침실4 시스템정환기 옵션 선택은 불가합니다.

5) 라이프업 바스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 (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욕실 특화	전타입	1안	- 벽 : 타일 (300*600/국산) - 도기/수전 : 국산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 전자비데 (욕실2)	2안	- 벽 : 타일 (600*1,200/외산) - 도기/수전 :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 욕실 약세사리류 색상 특화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 특화	9,370,000	937,000	8,433,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외산·국산 타일 규격이 상이하며,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가전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옵션형	실내기 대수	제조사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B/C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3,200,000	320,000	2,880,000	
	2안	4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700,000	570,000	5,130,000	
76A/B/C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2안	4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900,000	590,000	5,310,000	
84A	1안	3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4,700,000	470,000	4,230,000	
	2안	6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500,000	850,000	7,650,000	
84B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2안	5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7,400,000	740,000	6,660,000	
95A/B	1안	3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4,800,000	480,000	4,320,000	
	2안	6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800,000	880,000	7,92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천정속 배관 및 덕트로 인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기본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은폐, 매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 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또는 일부세대 주방/식당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제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구조체, 가구, 설비 배관의 간섭 등 세대 마감계획 현황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홍보 안내물 포함)에 설치된 위치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스템청정환기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옵션형	장비 대수	제조사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B/C, 76A/B/C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1,980,000	198,000	1,782,000	
	2안	4대	삼성전자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394,000	3,546,000	
84A/B, 95A/B	1안	3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2,960,000	296,000	2,664,000	
	2-1안	6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5,900,000	590,000	5,310,000	
	2-2안	5대	삼성전자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4,920,000	492,000	4,428,000	라이프업 스페이스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 시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천장 내 시스템청정환기 관련 전기시설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설치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 시 침실4 시스템청정환기 옵션 선택은 불가합니다.

3. 복합환풍기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1안	- 미설치	2안	- 2개소(욕실1,2)		계약시	입주지정일	
복합 환풍기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2개소(욕실1,2)	1,200,000	120,000	1,080,000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이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세대당 2개소 선택 가능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부부욕실과 공용욕실 천정에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설치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천장형 제습기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천장형제습기	전타입	1안	- 미설치	2안	- 1개소(드레스룸)	780,000	78,000	702,000	

- 각 타입별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에는 천장형제습기 설치가 포함되어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 선택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설치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금액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972401-01-031200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계좌와 동일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유상옵션금액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유상옵션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선택에 따라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납은 입주가 불가하며, 유상옵션금액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단지 여건 사항

1. 일반 공통사항

- 당 공동주택의 경우 2024.4.1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군포시 주택정책과-4982호)을 득한 사업으로(승인번호 2023-주택정책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01)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설계 도서는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당 공동주택은 관계법령에 따른 '군포 벌터.마벨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내 속한 공동주택 용지(B-1)로써 지구단위계획(단지 내, 외, 각종 기반시설포함),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한 개발 계획, 관계법령의 적용, 허가권자와의 협의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당 공동주택의 사업지 주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청사, 주차장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사업시행자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또는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부지 남서측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위치에 예정된 회전교차로 및 신규 도로(중로 2-74호선)의 개설은 당 사업지와 무관함. 이는 '군포 벌터.마벨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예정된 당 사업구역 외의 기반 시설로써 개별적인 개발사업자의 사업진행 및 인허가, 실제 개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지적 측량결과 및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 및 녹지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과정에 따라 일부 동 및 층별 일조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해진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용검사 완료 시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조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관계된 인허가 변경이 될 수 있고, 인허가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면적 변경 및 세부 사항이 변경

- 될 수 있음. 이 경우 최종 인가된 설계도서(준공도서 포함)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 각종 판단의 기준이 됨.
- 본 아파트의 명칭에 사용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에 사용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브랜드는 각 사의 소유로서, 브랜드를 포함한 아파트의 명칭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분양시 대지 공유지분은 사업승인 변경, 측량 등으로 대지 공유지분의 면적증감이 발생 될 수 있고, 대지 공유지분의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본 단지 착공 후 구조변경(토목 등), 외관 디자인(경관) 변경, 커뮤니티 시설의 변경, 기타 설계변경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의제 되는 인허가 및 각종 심의, 경미한 설계변경 포함)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분양 면적, 실 공사 내용이 변경 적용될 수 있음.

2. 단지 외부여건

[인접지역 도로, 기반시설 등의 개발 관련 사항]

-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주차장, 공공청사, 소공원, 광장 등) 토지 확보 및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지연 될 수 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진출입이 불편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준공 시 추후 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주거생활이 방해 받을 수 있음.
- 기반시설 공사 시 소음, 먼지,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안양천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음.
- 안양천변은 도로는 옹벽구조 이므로 높이 및 규모로 위화감이 발생 될 수 있고, 주거생활이 불편할 수 있음.
-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주차장, 공공청사, 소공원, 광장 등) 토지 확보 및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기반시설 여건 확보와 허가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안양천변 기반시설 도로 레벨은 구군포교에서 군포교까지 안양천 홍수위를 반영하여 조금씩 높아졌다가, 낮아지므로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 안양천변 군포교의 확장계획(B=3.0m, L=41m)은 현재 관련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허가권자와의 협의 과정 및 결과에 따라 확장 계획, 주체, 시점 등 개발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후문에서 북측 흥안대로(군포교) 방면으로 일방향 도로이므로, 흥안대로변에서 진입할 수 없어 아파트 출입 시 불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정문 및 후문 도로로 진출입 시 좌회전 및 우회전으로 진입이 불편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매연,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안양천 및 당정천과 인접하고 있어 폭우 시 하수도 역류, 범람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북측 흥안대로(군포교)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 분진, 시각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내·외 현황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과 전신주, 전선, 통신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생활이 간섭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는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대에 접하고 있으므로 소음, 악취, 매연, 먼지 등이 발생 될 수 있고, 일부 토지오염 등으로 주거생활에 피해가 발생 될 수도 있고, 토양정화 기간이 장기간 소요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준공 지연이 발생 될 수도 있음.
- 본 단지 지하주차장 및 주동 출입구(자전거보관소 포함),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학부모 대기공간 등 주요 공동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카메라를 설치 예정입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착공 후 문화재 발견 또는 지질의 변경(암반층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준공이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에 지상에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으로 악취, 소음 등의 주거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주변의 전파방해 및 난시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고층아파트로 내부일조 및 외부일조의 침해,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고, 본 단지의 소음을 최소화하고자 단지 내 방음벽 설치 및 흥안대로변 북측 저소음 포장 등을 시공하오니 현장여건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해당 인허가 조건 사항은 추후 변경허가로 시공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으로 도로, 완충녹지, 경관녹지, 소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단지 내 입주자 임의로 선형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면적(120,102㎡) 중 본단지(B-1블럭)를 제외하고, 본 단지과 접하고 있는 A1블럭 및 C블럭은 개발되지 않고(공장, 물류창고, 단독주택, 상가 등 건물 등 존치)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변경관 및 주변환경 등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기반시설 미정비 및 부족으로 본 단지로의 접근 등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음.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본 단지는 초등학생은 금정초등학교, 중학생은 군포시 중학교, 고등학생은 안양권 학군에 배치될 예정이며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개발·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인한 학생 유입경과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통학로 안전시설 등 학생 교육 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gu.kr>)
- 본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정보(거리, 시간, 지도 등)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로부터 금정초등학교까지 통학로 거리가 약 1.2km 이상이고, 공장지대, 고가도로 하부, 고물상, 재활용센터, 보차도 미분리 구간 및 잦은 교차로, 철도 횡단 등을 통과하고, 도로 횡단, 신호등 및 육교 등으로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에서 금정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통학로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협의결과, 개발계획 및 인허가에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단지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군포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 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군포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까지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군포시(경기도 군포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관청인 경기도 군포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경기도 군포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고, 본 아파트 및 본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아동 돌봄 수요가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군포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센터의 개소 여부 및 개소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군포시(경기도 군포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3.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방음벽이 설치되고, 시설의 준치 및 유지관리 등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이고,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108동 측면 사업지 내부로 흉안대로변(군포교) 소음 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되고, 방음벽 설치로 조망, 채광, 통풍, 조경 등 주거여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방음벽의 설치 위치 및 높이,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방음벽은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보행축(101동과 104동 사이, 102동과 203동 사이)으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어 단지 내 외부인 통행으로 주거생활의 간섭 및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비상차량통선 포함)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주거환경에 일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지하 1층 택배동선의 경우 택배차량 출입 등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택배차량은 단지 남측 주 출입구를 통해 진입가능하며, 북측 부출입구 램프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량이 진입이 불가함.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 시까지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주거동의 설비공간과 연결된 각종 배선, 배관 및 조명, 소방설비, 환기설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통행 가능한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되므로 해당높이(지하1층 2.7m / 지하2층 2.3m) 이상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으며 실제 동 출입구 위치별, 각 층별 현황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통하여 동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중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시행위탁자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및 시공성 개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등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경계 및 내부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 및 구조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급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 옥외조명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위치 및 층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주택형별로 현황이 상이함으로 설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관련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개폐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며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일부 창호의 경우 창문형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아파트 1층 및 지하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마감사양 등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실제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출입구의 경비실, 문주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 입체적 조화를 위하여 위치 및 형태, 재질,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및 각종시설물(DA,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등) 및 마감재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등)은 이미지로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단지 경계선 외부공간(녹지, 주변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층벽 포함)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각 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시설물 훼손이나 해체를 할 수 없습니다.(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101동, 102동, 105동, 107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중계장치는 지하 1층 102동, 103동, 107동 제연헬륨 및 101동, 102동, 105동, 107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 위치, 보도선형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관리는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지상에 별도 구획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유아 놀이터, 운동마당, 잔디 마당 등 조경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건축 및 설비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을 위한 피트공간으로 인해 실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운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향/일조량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주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보행자출입구는 별도 2개소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주 출입구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용 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 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지하 1층에 설치되며 별도의 환기 및 채광창이 없는 관계로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 통풍등이 불리할 수 있음.
- 103동 하부에 인접한 지하 1층에 주민공동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일부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경로당은 101동 102동 동측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지상 1층에 위치하여 인접한 세대에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05동 앞쪽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모형에 표현된 대지경계선 외부 도로의 형태 및 레벨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달라 질 수 있으며, 조경 및 토목 용벽의 “형태 및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시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전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거동, 주민공동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D/A등)등 모든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위치, 수량 등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또는 실제 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실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 및 사인물등이 세대 외벽에 일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물의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3개층 이하)는 석재, 석재뿔칠 및 수성페인트등으로 일부 구분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법규 변경 및 특화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부 재질 및 적용부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경관, 색채 디자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관청의 경관심의를 거쳐 계획되었으며, 분양 이후에 변경 사항 발생 시 경관(변경)심의 또는 인허가 관청과의 변경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 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 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 및 문의 위치, 개수, 형태, 재질, 색상등 세부 사항들은 향후 성능개선 및 이용성 향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행위탁자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야간조명 및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공통사항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 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 또는 조경석 쌓기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등이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중 위치와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일부차종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어댑터는 소비자가 구비하여야 함.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될 수 있음.

■ 동별/층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각 동은 위치에 따라 주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탐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외부사인물,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분양 이후에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 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음.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 또는 입면디자인의 변경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비상차량동선은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비상차량동선 위로 친환경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피류 등 조경이 일부 적용되며 화재 등 비상시 차량 통행에 의한 유지보수로 입주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세부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 시 자체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등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단순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시행위탁자가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추후 입주자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함.
- 시행위탁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상품성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 동의서가 징구될 예정이며, 수분양자의 동의 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됨.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04g"임.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하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음.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며, 관리사무소에 입주예약 중복으로 인해 사용시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곽부 경사지형으로 인한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4.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티프너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및 각종 고정형 부착물로 인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상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 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부층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주민공동시설(103동 일부), 피트층 등 피난사다리를 통한 대피활동이 어려운 2층 세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3층 이하 세대 설치 의무사항 아님)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음.
- 각종 내, 외부 마감자재(세대 마감재 포함)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 제품사양일 경우라도 실제 제조물 생산 시기 및 제조 환경 차이에 따라 색상이나 질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단지 모형포함)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치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강화유리 난간대가 아닌 일반 철재 난간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로 인해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스마트 스위치,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감지기 등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내, 외부 자재(세대 마감재 포함)의 실제 마감두께(최종 마감면)는 본 시공 시 바탕이 되는 위치와 세부 시공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중문(유상옵션)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가 되는 경우, 이에 따라 마감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됨.)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람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함.
-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건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음.
- 플러스오피스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됨.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함.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됨.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됨.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함.(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름.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함.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함.(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함.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시행위탁자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함.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름.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시행위탁자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을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0.204g	VII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3m ~ 7.0m	2.3m (지하1층 2.7m)	2.7m(주출입구 램프#1) 2.3m(부출입구, 램프 #2)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되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환풍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구 주변 및 덮개 등의 형태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동별 1층 필로티형 출입구 및 지하 동출입구의 경우, 주동의 구조 계획에 따라 동별로 출입구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구간에 입주자와 외부인과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난간은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방지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외부인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 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축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임.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에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단위세대에는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발코니수전, 시스템에어컨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각 시행주체 및 국

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등)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각 사업주체의 사정 및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으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 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분양이 완료되면, 준공 및 입주 전이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 분양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음.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이 오차범위(3%이내) 내인 경우 현실적으로 정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 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수분양자의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무궁화신택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제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역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

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등·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주)대원포비스	(주)세움이앤씨건축사무소	(주)성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108,594,500	877,414,539	899,934,000	198,000,000
사업자등록번호	120-81-25721	605-81-28078	138-81-84226	519-87-00091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특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634,402,812,000	01292024-101-00032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보증약관 제3조)**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건물관련 인증서

<h4>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h4>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4> <p>1. 공동주택명: 군포시 별티.마벨지구 B-1블록 공동주택 2. 신 청 자: ㈜서재종합건설 3. 대 지 위 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 별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 (균정동 146-3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p> <table border="1"> <caption>가. 소용 관련 등급</caption>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일광충족률 차단상승</td><td>★</td></tr> <tr><td>2. 중량충족률 차단상승</td><td>★</td></tr> <tr><td>3. 세대 간 일사면의 차용상승</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회랑실 음폐쇄 수준</td><td>★★★</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caption>나. 구조 관련 등급</caption>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기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td><td>★</td></tr> </tbody>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20. 단열계 수치상 조성</td><td>★★★</td></tr> <tr><td>21. 자연채광 확보율</td><td>★</td></tr> <tr><td>22. 섀도우캡</td><td>★</td></tr> <tr><td>23. 비오류 조성</td><td>★</td></tr> <tr><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td><td>★★★</td></tr> <tr><td>25. 차음 평가등급 확보</td><td>★★★</td></tr> <tr><td>26. 단열계 수치상 조성 확보</td><td>★★★</td></tr> <tr><td>27. 차음도 조정방향이 열차 수준</td><td>★★★</td></tr> </tbody>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차권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안전행로의 충실도/계획</td><td>★★★</td></tr> <tr><td>6. 양생 - 유지관리 문서 및 대뉴밀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열제도의 사용처 약자처리</td><td>★</td></tr> <tr><td>10. 생활환경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생활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음나트릭의 통풍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안전 콘셉트</td><td>★</td></tr> </tbody> </table> <p>마. 파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head> <tbody> <tr><td>1. 경기 및 콘크리트비</td><td>★</td></tr> <tr><td>2. 세면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파난기벽</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호나비</td><td>★</td></tr> <tr><td>6. 피연설비</td><td>★</td></tr> </tbody> </table>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1월 15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p> <p>210mmx297mm(백지) 120g/㎡</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일광충족률 차단상승	★	2. 중량충족률 차단상승	★	3. 세대 간 일사면의 차용상승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회랑실 음폐쇄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단열계 수치상 조성	★★★	21. 자연채광 확보율	★	22. 섀도우캡	★	23. 비오류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차음 평가등급 확보	★★★	26. 단열계 수치상 조성 확보	★★★	27. 차음도 조정방향이 열차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권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안전행로의 충실도/계획	★★★	6. 양생 - 유지관리 문서 및 대뉴밀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열제도의 사용처 약자처리	★	10. 생활환경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생활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나트릭의 통풍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셉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기 및 콘크리트비	★	2. 세면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파난기벽	★★★	5. 복도 및 계단 유호나비	★	6. 피연설비	★	<h4>녹색건축 예비인증서</h4>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군포시 별티.마벨지구 B-1블록 공동주택 건축주: ㈜서재종합건설 종류(예정)명: -</p> <p>【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0045-F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4.1.15. - 사용종결일</p> <p>【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등급(1등급준비)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요건: 약도첨부고시 제2023-329호 별 기 지: 해인축사사주소 부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평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인증등급</th> </tr> </thead> <tbody> <tr><td>토지이용 및 교통</td><td>44%</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td>65%</td></tr> <tr><td>재료 및 자원</td><td>49%</td></tr> <tr><td>물순환관리</td><td>64%</td></tr> <tr><td>유지관리</td><td>96%</td></tr> <tr><td>생태환경</td><td>27%</td></tr> <tr><td>일대환경</td><td>62%</td></tr> </tbody> </table> <p>2024년 1월 15일</p> <p>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p>※ 해당인증서를 발급 받은 건축물은 한국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받아야 하며, 계약당시에 따라 3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p>	분야	인증등급	토지이용 및 교통	44%	에너지 및 환경오염	65%	재료 및 자원	49%	물순환관리	64%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27%	일대환경	62%	<h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p> <h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4>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요건</th> </tr> </thead> <tbody> <tr><td>건축물명: 군포시 별티.마벨지구 B-1블록 공동주택 건축물</td><td>인증번호: 23-주-에너지-0142</td></tr> <tr><td>인증번호: 20270505</td><td>평가자: 산유영</td></tr> <tr><td>주 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 별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 (당동 146-3번지 일원)</td><td>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기술연구원</td></tr> <tr><td>층 수: 지하2층 / 지상45층</td><td>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td></tr> <tr><td>건축물의 주안 용도: 공동주택</td><td>유효기간: 사용종결 또는 사용권상 종료일</td></tr> <tr><td>실적자: (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td><td>인증등급: 1등급</td></tr> </tbody> </table> <p>다.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에너지 효율등급</th> <th>등급</th> <th>CO₂ 배출량 (kg/㎡·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td>1등급</td><td>48</td><td>48</td><td>99.9</td></tr> <tr><td>2등급</td><td>56</td><td>56</td><td>99.9</td></tr> <tr><td>3등급</td><td>64</td><td>64</td><td>99.9</td></tr> <tr><td>4등급</td><td>72</td><td>72</td><td>99.9</td></tr> <tr><td>5등급</td><td>80</td><td>80</td><td>99.9</td></tr> <tr><td>6등급</td><td>88</td><td>88</td><td>99.9</td></tr> <tr><td>7등급</td><td>96</td><td>96</td><td>99.9</td></tr> <tr><td>8등급</td><td>104</td><td>104</td><td>99.9</td></tr> <tr><td>9등급</td><td>112</td><td>112</td><td>99.9</td></tr> <tr><td>10등급</td><td>120</td><td>120</td><td>99.9</td></tr> </tbody> </table> <p>다.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head> <tbody> <tr><td>내방</td><td>5.0</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44.8</td><td>82.1</td><td>62.3</td><td>16.9</td><td>16.9</td></tr> <tr><td>냉방</td><td>30.7</td><td>35.6</td><td>26.3</td><td>7.2</td><td>7.2</td></tr> <tr><td>총합</td><td>9.7</td><td>7.3</td><td>20.0</td><td>3.4</td><td>3.4</td></tr> <tr><td>총기</td><td>-</td><td>3.3</td><td>9.0</td><td>1.5</td><td>1.5</td></tr> <tr><td>합계</td><td>89.2</td><td>129.3</td><td>117.6</td><td>29.0</td><td>29.0</td></tr> </tbody>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의 냉방, 난방, 조명, 풍동, 기타 부속에서 사용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의 냉방, 난방, 조명, 풍동, 기타 부속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인증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3년 08월 21일</p> <p>한국건설에너지기술연구원</p>	건축물 개요	인증요건	건축물명: 군포시 별티.마벨지구 B-1블록 공동주택 건축물	인증번호: 23-주-에너지-0142	인증번호: 20270505	평가자: 산유영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 별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 (당동 146-3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기술연구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45층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의 주안 용도: 공동주택	유효기간: 사용종결 또는 사용권상 종료일	실적자: (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등급: 1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등급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1등급	48	48	99.9	2등급	56	56	99.9	3등급	64	64	99.9	4등급	72	72	99.9	5등급	80	80	99.9	6등급	88	88	99.9	7등급	96	96	99.9	8등급	104	104	99.9	9등급	112	112	99.9	10등급	120	120	99.9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내방	5.0	0.0	0.0	0.0	0.0	난방	44.8	82.1	62.3	16.9	16.9	냉방	30.7	35.6	26.3	7.2	7.2	총합	9.7	7.3	20.0	3.4	3.4	총기	-	3.3	9.0	1.5	1.5	합계	89.2	129.3	117.6	29.0	29.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일광충족률 차단상승	★																																																																																																																																																																																																									
2. 중량충족률 차단상승	★																																																																																																																																																																																																									
3. 세대 간 일사면의 차용상승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회랑실 음폐쇄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단열계 수치상 조성	★★★																																																																																																																																																																																																									
21. 자연채광 확보율	★																																																																																																																																																																																																									
22. 섀도우캡	★																																																																																																																																																																																																									
23. 비오류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차음 평가등급 확보	★★★																																																																																																																																																																																																									
26. 단열계 수치상 조성 확보	★★★																																																																																																																																																																																																									
27. 차음도 조정방향이 열차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권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안전행로의 충실도/계획	★★★																																																																																																																																																																																																									
6. 양생 - 유지관리 문서 및 대뉴밀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열제도의 사용처 약자처리	★																																																																																																																																																																																																									
10. 생활환경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생활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나트릭의 통풍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셉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기 및 콘크리트비	★																																																																																																																																																																																																									
2. 세면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파난기벽	★★★																																																																																																																																																																																																									
5. 복도 및 계단 유호나비	★																																																																																																																																																																																																									
6. 피연설비	★																																																																																																																																																																																																									
분야	인증등급																																																																																																																																																																																																									
토지이용 및 교통	44%																																																																																																																																																																																																									
에너지 및 환경오염	65%																																																																																																																																																																																																									
재료 및 자원	49%																																																																																																																																																																																																									
물순환관리	64%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27%																																																																																																																																																																																																									
일대환경	62%																																																																																																																																																																																																									
건축물 개요	인증요건																																																																																																																																																																																																									
건축물명: 군포시 별티.마벨지구 B-1블록 공동주택 건축물	인증번호: 23-주-에너지-0142																																																																																																																																																																																																									
인증번호: 20270505	평가자: 산유영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 별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 (당동 146-3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기술연구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45층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의 주안 용도: 공동주택	유효기간: 사용종결 또는 사용권상 종료일																																																																																																																																																																																																									
실적자: (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등급: 1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등급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1등급	48	48	99.9																																																																																																																																																																																																							
2등급	56	56	99.9																																																																																																																																																																																																							
3등급	64	64	99.9																																																																																																																																																																																																							
4등급	72	72	99.9																																																																																																																																																																																																							
5등급	80	80	99.9																																																																																																																																																																																																							
6등급	88	88	99.9																																																																																																																																																																																																							
7등급	96	96	99.9																																																																																																																																																																																																							
8등급	104	104	99.9																																																																																																																																																																																																							
9등급	112	112	99.9																																																																																																																																																																																																							
10등급	120	120	99.9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내방	5.0	0.0	0.0	0.0	0.0																																																																																																																																																																																																					
난방	44.8	82.1	62.3	16.9	16.9																																																																																																																																																																																																					
냉방	30.7	35.6	26.3	7.2	7.2																																																																																																																																																																																																					
총합	9.7	7.3	20.0	3.4	3.4																																																																																																																																																																																																					
총기	-	3.3	9.0	1.5	1.5																																																																																																																																																																																																					
합계	89.2	129.3	117.6	29.0	29.0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서해종합건설,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사업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서해종합건설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 (주)서해종합건설과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주)서해종합건설과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에 있으며 시행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관계자**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주)무궁화신탁	(주)서해종합건설	(주)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6층(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20111-0018087	110111-2137895
대표전화	02-3456-0000	02-761-1234	02-2288-311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6월 7일(금)
사이버 건본주택 오픈		6월 7일(금)
특별공급	신청	6월 17일(월)
일반공급	1순위 신청(해당지역)	6월 18일(화)
	1순위 신청(기타지역)	6월 18일(화)
	2순위 신청	6월 19일(수)
당첨자발표		6월 26일(수)
사전 서류 접수		6월 27일(목) ~ 7월 3일(수)
공급 계약		7월 8일(월) ~ 7월 10일(수)
건본 주택 주소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31
사이버 건본주택 주소		https://www.prugio-grandbleu.com
분양 문의		1599-9399

견본주택 위치



사업지 위치

